

현대인의 생활법률

「연속된 과실행위에 대한 민사·형사상 법적 책임 고찰」

- 교통사고 및 의료과실 사례를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부

부동산학 전공

32223844 임지원

2025.06.12.

목 차

I. 서론	3
II. 본론	3
A. 교통사고에 따른 법적 책임	3
1. 의의 (형사책임 + 민사책임)	3
2. 법률 요건	4
3. 법률 효과	5
B. 의료과실에 따른 법적 책임	6
1. 의의 (형사책임 + 민사책임)	6
2. 법률 요건	7
3. 법률 효과	8
III. 결론	10

I. 서론

한국주식회사 소속 운전자 최만수는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영희를 부주의하게 충돌하였다. 이 사고로 영희는 전치 16주의 중상을 입고 병원법인 한국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치료 과정에서 병원 소속 의사 철수가 허리 압박 처치를 잘못 시행하여, 환자의 상태가 오히려 악화되었고, 이에 따라 영희는 추가 입원이 불가피해졌다.

해당 사건을 보다 법리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본 보고서에서는 운전자의 음주운전이나 항정신성의약품 복용 등과 같은 중대한 위법 요소는 개입되지 않았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즉, 운전자와 의료진 모두 정상적인 업무 환경에서 통상적인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그에 따른 민사 및 형사상 법적 책임의 성립 여부를 중심으로 본 사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피해자인 영희는 일반적인 성인으로 가정하며,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 규정이나 행위능력 제한 등은 본 논의에서 제외한다. 이유는 직무상 과실에 따른 일반적 법률책임의 구조를 중심으로 분석을 전개하고자 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기 때문이다.

특히 본 사건은 1차 교통사고와 2차 의료사고라는 서로 다른 유형의 과실행위가 연속적으로 발생한 사례로, 두 사안 모두 직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인적 피해라는 점에서 유사한 법적 구조를 갖는다. 그러나 적용되는 법령의 내용과 책임 성립 기준에는 중요한 차이가 존재하므로, 각 사안의 특수성을 반영한 개별적 고찰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 과제에서는 피해자인 영희가 입은 손해가 상당히 중대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을 바탕으로, 가해자인 운전자 및 의사, 그리고 이들의 사용자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이 발생하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운전자 최만수와 사용자 한국주식회사의 교통사고에 따른 불법행위 및 사용자책임을 분석하고, 둘째, 의사 철수와 병원법인 한국병원의 의료과실 여부 및 손해배상책임을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위 두 책임 구조를 바탕으로 피해자 영희가 취할 수 있는 민사상 청구 및 형사 고소 절차를 정리하고자 한다.

II. 본론

A. 교통사고에 따른 법적 책임

1. 의의 (형사책임 + 민사책임)

본 사안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단순한 물적 피해가 아닌 인적 피해가 수반된 인피사고로, 그 법적 책임이 형사책임과 민사책임 양 측면에서 문제된다.

먼저 형사책임 측면에서는, 교통사고는 그 발생 경위와 피해 정도에 따라 다양한 형사적 평가가 이루어진다. 일반적인 물적 피해만 있는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지만, 인피사고의 경우 형사처벌이 병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가해자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 12대 중과실(예: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 나아가 피해자가 전치16주에 이르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이는 통상적인 과실치상죄보다도 중하게 처벌된다.

나아가 피해자가 전치 16주에 이르는 상해를 입었다는 것은 결과의 중대성을 보여주는 사정으로서 형법 제268조 적용 가능성을 강화하며, 본 사안에서의 형사적 책임이 보다 무겁게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민사책임 측면에서는, 가해자인 운전자 최만수가 택시회사 소속의 피용자라는 점에서,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책임뿐만 아니라,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책임도 함께 문제된다. 특히 사용자책임은 피용자의 직무 중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가 일정한 요건 아래 연대책임을 지는 특수불법행위 유형이며, 피해자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운전자가 직무 중 부주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회사는 피용자의 행위에 대한 관리 및 감독 책임의 범위 내에서 연대책임을 진다. 이때 사용자가 선임·감독상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면책되지 않으며, 이러한 구조는 피해자의 실질적 구제를 위한 민사책임의 특징을 드러낸다.

이에 따라 피해자인 영희는 가해 운전자뿐 아니라 소속 회사인 한국주식회사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법률 요건

본 사안에서 문제되는 법적 책임은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각각 적용 가능한 법률과 성립 요건은 다음과 같다.

우선 형사책임의 경우, 운전자 최만수는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 과실치상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서 정한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하는 법률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특히 본 사건은 피해자 영희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에 사고를 당한 점에서, 같은 법령이 규정한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이는 12대 중과실 사유 중 하나이다. 따라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처벌이 가능하므로, 가해자인 최만수는 공소 제기를 피하기 어렵다.

더불어 최만수가 택시운전기사로서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며, 부주의로 보행자를 충돌

하여 중상을 입힌 점에서,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 과실치상죄 역시 적용될 수 있다.

이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가해자가 '업무에 종사하는 자'일 것, 둘째,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을 것, 셋째, 그로 인해 타인에게 상해가 발생하였을 것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본 사안은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한다.

다음으로 민사책임의 경우, 피해자인 영희는 가해자인 운전자 최만수뿐만 아니라 그가 소속된 회사인 한국주식회사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데, 본 사안은 계약관계가 아닌 교통사고로 인한 인신 피해에 해당하므로, 불법행위에 따른 책임이 적용된다.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위법한 가해행위가 존재해야 하며, 둘째, 그 행위에 대해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셋째, 피해자에게 실제 손해가 발생했어야 하며, 넷째,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한다. 본 사건에서는 최만수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충돌한 행위가 위법한 가해행위에 해당하고, 전방 주시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서 과실도 명백하며, 피해자는 전치16주의 상해를 입은 만큼 손해도 존재한다. 또한 운전자의 행위와 피해자 손해 사이에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불법행위책임의 요건은 충족된다.

나아가 사용자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자가 사용자에 고용된 피용자일 것, 사고가 직무집행 중에 발생했을 것, 그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할 것, 그리고 사용자에게 일정한 감독상 과실이 추정될 수 있을 것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본 사안에서 최만수는 택시회사에 소속된 운전사로서 사고 당시 근무 중이었으므로, 직무와 사고 사이의 관련성 또한 인정된다.

이와 유사한 판단은 대법원 97다16572 판결에서도 확인된다. 이 판례에서는 회사의 고철 정리 업무를 맡은 직원이, 고철을 수거하러 온 외부인에게 실수로 농약을 음료수로 오인해 건넨 결과 피해자가 사망한 사안에 대하여, 회사의 사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보고 사용자책임을 인정하였다. 이는 회사 소속 피용자가 본래 직무와 관련된 상황에서 저지른 과실에 대해 회사가 민법상 연대책임을 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이다.

따라서 본 사안에서도 한국주식회사는 운전자인 최만수의 불법행위에 대해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책임을 부담하게 되며, 사용자가 스스로 선임 및 감독상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서 면책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운전자와 회사는 연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3. 법률 효과

(1) 형사책임의 법률 효과

운전자 최만수는 업무상 과실로 보행자를 상해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법」 제268조에 따라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 이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또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의하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12대 중과실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소 제기 제한의 예외가 적용되므로, 본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다.

결국 최만수는 법률상 처벌 불가능성이 제한된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결과가 발생한다.

(2) 민사책임의 법률 효과

민사책임에 있어서 피해자 영희는 가해자 최만수 외에도 소속 회사인 한국주식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과 제756조의 사용자책임 요건이 모두 충족된 데 따른 것으로, 특히 사용자책임은 민법상 특수불법행위로 분류된다.

일반적인 불법행위와 달리, 사용자책임은 피용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 일정한 요건 아래 사용자에게까지 연대책임을 지게 하므로,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기능한다.

아울러 본 사건에서는 사고가 택시운전이라는 직무 수행 중 발생한 점에서, 사용자책임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회사 측이 피용자의 선임·감독에 있어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한국주식회사에게도 사용자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여기서 구체적인 손해배상 범위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 적극적 손해: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치료비, 간병비, 교통비 등 직접적인 지출 손해
- 소극적 손해: 사고로 인해 발생하지 못한 수입이나 노동능력 상실로 인한 장래 손해
- 정신적 손해: 피해자가 겪은 고통과 불안, 트라우마 등 비재산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결과적으로, 운전자 최만수는 위 세 가지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지며, 소속 회사 역시 사용자책임에 따라 연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을 부담하게 된다.

B. 의료과실에 따른 법적 책임

1. 의의 (형사책임 + 민사책임)

본 사안에서 두 번째로 문제 되는 법적 쟁점은, 교통사고 이후 피해자 영희에 대한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과실로 인한 2차 피해이다. 이는 운전자의 과실과는 별개의 독립된 법적 사안으로, 해당 의료행위가 환자의 생명·신체에 손해를 초래한 경우, 행위자에게 형사상 및 민사상 책임이 병존할 수 있다.

먼저 형사책임 측면에서는,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성과 주의의무가 요구되는 직무에 해당하며, 이를 위반하여 환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형법 제268조에서 정한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성립이 문제될 수 있다. 특히 환자가 응급상황 하에서 치료를 받는 과정이었다면, 의료인의 판단 및 처치의 정당성과 그 과정에서의 과실 유무가 형사책임 판단의 핵심 요소가 된다. 나아가 응급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한 응급의료법 제63조의 적용 가능성도 함께 논의될 수 있다.

다음으로 민사책임 측면에서는, 의료인의 진료상 과실은 단순한 계약상의 의무 위반을 넘어서, 민법 제750조상 불법행위 책임의 성립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또한 해당 행위가 소속 의료기관의 직무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 병원은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책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구조는 의료행위의 특성상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보다 넓은 범위에서 보호하려는 입법적 취지를 반영한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의료인과 병원을 상대로 병존적 또는 연대적 책임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며, 구체적인 손해의 범위와 인과관계는 별도로 판단된다.

2. 법률요건

본 사안에서 의사 철수와 소속 병원법인 한국병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논하기 위해서는, 형사책임과 민사책임 각각의 성립 요건을 검토해야 한다. 이러한 책임 구조는 앞서 운전자 최만수의 교통사고에서 살펴본 것과 마찬가지로, 직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인적 피해라는 점에서 유사한 논리 구조를 따른다.

먼저 형사책임 측면에서, 철수에게 형법 제268조에서 규정한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피고인이 일정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일 것, 둘째 그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을 것, 셋째 그 결과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을 것이라는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한다. 특히 의료인은 그 직무의 특성상 일반인보다 높은 수준의 전문적 주의의무를 요구받는다. 따라서 진료 과정에서 예견 가능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의료상 통상적인 기준에 반하는 행위가 있었다면, 이는 과실로 평가될 수 있다. 본 사안의 경우, 철수가 허리 치료 중 과도한 압박을 가해 환자의 상태를 악화시켰다는 사실이 명백하다면, 주의의무 위반과 상해 결과 간 인과관계가 문제될 수 있다.

또한 해당 행위가 응급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3조의 적용 가능성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조항은 응급의료행위가 생명 또는 건강에 대한 위급 상황 하에서 불가피하게 이루어졌고, 행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

우에는 형법 제268조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의 적용을 위해서는 응급상황의 존재, 의료행위의 불가피성, 그리고 행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었는지 여부 등 복합적인 판단 요소를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본 사안에서 이를 적용할 수 있을지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다.

민사책임 측면에서는, 철수의 행위가 민법 제750조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손해 발생, 인과관계의 네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책임능력은 의료인에게 당연히 전제된다. 진료 과정에서의 주의의무 위반은 과실로 추단될 수 있고, 치료 행위가 피해자의 상태를 악화시켜 추가 입원을 초래하였다면 손해의 발생과 인과관계도 인정될 여지가 있다. 나아가 철수가 병원 소속 의사로서 직무 중에 진료를 수행한 것이라면, 병원법인 한국병원은 민법 제756조에 따라 사용자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사용자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사용자 업무와 관련되어 있어야 하며, 사용자가 선임 및 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면책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구조는 앞서 A 파트에서 살펴본 운전자와 택시회사 간의 관계에서와 유사한 법적 판단 틀을 따른다.

3. 법률 효과

본 사안에서 피해자 영희는 허리 치료 과정에서 과도한 압박을 받았고, 그 결과 상태가 악화되어 재입원이 불가피할 정도의 신체적 손해, 즉 상해를 입었다.

이러한 결과가 의료인의 직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행위에서 비롯된 것으로 평가된다면, 의사 철수에게는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다. 동조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그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본 사안에서 철수는 이 조항에 따른 형사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아울러, 형사책임과는 별도로 의료과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행정상 책임도 함께 수반될 수 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은 의료과실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거나 과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경우, 의사면허 정지 또는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처분이나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문제에서 철수가 피해자를 “급하게 치료하였다”는 사실이 언급되어 있으나, 이는 곧바로 응급의료법 제63조에서 말하는 응급의료행위로 해석되지는 않는다. 응급의료법 제63조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① 응급상황의 존재, ② 처치의 불가피성, ③ 중대한 과실의 부재가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하지만 본 사안에서 피해자 영희는 사고 후 병원에 이송되어 입원한 상태였고, 해당 치료는 일상적인 진료 과정 중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철수가 치료 중 허리에 과도한 압박을 가하였다는 사실 자체는 의료상 주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중대한 과실의 존재를 시사한다. 따라서 ‘급하게 치료했다’는 표현이 존재하더라도, 응급의료법 제63조에 따른 감경 또는 면제 요건은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이와 유사한 사안으로 대법원은 2018도15138 판결에서, 비만 환자에게 수차례 수술을 시행한 의사가 중환자실이 없는 병원에 피해자를 장기간 입원시킨 채 적절한 시점에 상급병원으로 전원하지 않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에 대해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에 따른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인정하고 금고형을 선고하였다. 이 판례는 의료인의 과실 행위가 결과적으로 심각한 신체 손해로 이어졌을 경우 형사책임이 명확히 성립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본 사안은 의료사고에 해당하므로, 피해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한 조정 절차에 참여하고, 조정이 성립되거나 합의에 따라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공소 제기가 제한된다. 단, 피해자가 생명에 대한 위험에 이르렀거나, 장애 또는 난치성 질환을 입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형사소추가 가능하므로, 피해자의 실제 후유증 정도가 형사절차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민사책임의 측면에서는, 철수의 과실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추가 치료를 요하게 되었다면, 이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철수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이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는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인 과실, 위법성, 손해발생, 인과관계 전부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며,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 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된다.

손해는 추가적인 의료비, 입원비 등과 같은 적극적 손해뿐 아니라, 치료기간 동안의 소득 상실 등 소극적 손해, 그리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까지 포함할 수 있다.

나아가 철수가 병원의 피용자 신분으로 직무 중 해당 행위를 한 경우, 병원법인 한국병원은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책임을 부담하게 되며, 피해자는 철수와 병원을 상대로 연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는 앞선 A 파트에서 운전자 최만수와 택시회사 한국주식회사가 공동 책임을 지는 구조와 동일하다.

결론적으로, 본 사안에서 의사 철수는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을 모두 부담할 수 있으며, 병원 역시 민사상 사용자책임을 통해 연대책임을 질 수 있다. 형사소추 여부는 응급의료 여부보다는 오히려 의료분쟁조정제도 활용 여부 및 피해자의 손해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민사적 배상 책임은 피해자의 실제 치료 경과와 손해 발생 내역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될 것이다.

III. 결론

결론적으로, 피해자 영희는 교통사고 및 의료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민사 및 형사 양측 절차를 통해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첫째, 민사책임 측면에서, 운전자 최만수의 부주의로 인한 교통사고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및 제756조(사용자책임)에 따라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며, 그의 사용자 한국주식회사도 사용자책임을 진다. 또한, 병원 소속 의사 철수의 과실로 피해가 악화된 경우, 철수 개인과 병원법인 한국병원 역시 동일한 범위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피해자는 이들에 대해 치료비, 입원비 등 적극적 손해, 입원으로 인한 수입 손실 등 소극적 손해, 그리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까지 포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해자 및 사용자를 공동 피고로 삼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둘째, 형사책임 측면에서는 운전자에게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철수에게도 같은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 업무상과실치상죄는 고의 없이 과실로 상해를 유발한 경우에 성립하며, 친고죄가 아니므로 고소 없이도 수사 및 공소제기가 가능하다. 공소시효는 7년으로 비교적 여유가 있지만, 신속한 수사를 위해 가능한 한 조속히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의료과실의 경우,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피해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하고 조정조서가 확정된 경우 형사 고소는 제한될 수 있으므로, 형사절차 진행을 원할 경우 분쟁조정제도 활용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셋째, 피해자는 민사소송과 형사절차를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이는 서로 독립된 절차이다. 다만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민사소송법 제202조에 따라 민사재판에서 강한 증거력을 가질 수 있으므로, 소송 전략상 유기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넷째, 시효와 입증책임에도 유의해야 한다. 민사소송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사고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민법 제766조), 손해 발생, 과실,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다. 교통사고는 경찰기록, 진단서 등, 의료과실은 진료기록, 감정소견서 등을 통해 입증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피해자 영희는

- ①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 ② 형사 고소를 통해 가해자들의 형사책임을 추궁하며,
- ③ 의료분쟁조정절차를 통해 신속한 배상을 도모하는 다양한 선택지를 고려할 수 있다.

위에서 명시된 각 절차는 법적 성격, 요건, 시효 등이 상이하므로, 사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권리행사를 설계하는 것이 권리 보호를 위해 필수적

이다.

이처럼 교통사고와 의료과실이라는 하나의 사건은 민사·형사·행정 절차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구제를 요구하며, 각 절차는 고유한 기준과 요건을 통해 피해자의 권리 회복을 뒷받침한다. 이러한 복합적 구조는 법이 단순히 책임을 추궁하는 수단을 넘어, 현실에서 피해자가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절차와 제도를 갖춘 장치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궁극적으로, 법은 개별 사안의 복잡성을 수용하고, 다양한 구제 경로를 통해 피해자의 실질적 회복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신뢰와 정의 실현에 기여하는 제도적 기반으로 기능한다.